

제392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2월2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2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30)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50)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1)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97)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0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3)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76)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8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050)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066)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28) 2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0) 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0) 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1) 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2) 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7) 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3) 2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2) 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3) 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6) 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2) 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0) 2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6) 2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7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태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여러 바쁜신 일정 중에도 공직

선거법 의결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2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0)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0)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1)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7)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3)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6)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0)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6)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김태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및 계속 상정합니다.

조해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 소위원장 조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고용진 의원, 김성원 의원, 용혜

인 의원, 김미애 의원, 황보승희 의원, 장경태 의원, 윤준병 의원, 이은주 의원, 노웅래 의원, 김민철 의원,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을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장치 등의 정격출력 및 음압 수준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소리의 출력 없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위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년 조해진 간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해 주신 김영배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과 조해진 소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주혜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세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부터 해 주시지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정치적 관심이 있고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공감합니다.

○전주혜 위원 이 법안은 지난 11월 10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국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조정이 되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소위를 신속하게 통과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기회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한 실질적인 국민 정치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가 혹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보완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도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앞으로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선과 정비에 대한 논의를 열심히 하겠지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정치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또 앞으로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의정부시를 김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18세로 피선거권을 같이 이렇게 일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 접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아마 본 위원이 먼저 접수돼 있는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해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줬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만 18세부터 하게 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김민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의 길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전에 우리 총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선거구 획정 방식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김민철 위원 지금은 톱다운 방식인데 제가 보텀업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고려를 좀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지금 실무진에서 지난번 2차 회의 때 말씀 주신 것에 맞춰 가지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지금 먼저 위에 숫자를 적어 놓고 아래서, 밑에서 대충 정해라 이러면 지역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합리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텀업 방식으로 아래에서, 기초에서부터 먼저 어느 정도 생활권이라든지 지역 특성이라든지 동별 이런 걸 고루 감안해서 올라와서 시도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은가 해서 그때 한번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어쨌든 보텀업 방식으로 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김민철 위원 지금 이번에는 시간이 좀 많이…… 이번도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걸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이번에 검토를 해서 그 안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올려 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렇게는 한번 속도를 맞춰 보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번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김민철 위원 그러면 총장님 생각에는 지금 톱다운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아니, 낫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현재는 현행법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시간 때문에……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탬업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는 나눠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한 의견을 꼭 좀 보내 주세요, 저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오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고 또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 특히 청년의 정치 참여, 참정권 확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여야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18세 하향이라는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그동안 끈질기게 만들어 왔던 변화의 결과가 이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소위 때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는데, 사무총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텐데 정당 가입 연령이 여전히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서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 정당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청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분발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년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정말 정개특위가,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소위 위원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많이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거권 만 18세 연령 하향부터 정말 이 피선거권 하향까지 함께 논의가 돼서 작년에 통과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대해서 이제 걸음마를 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만 16세 교육감 선거권 하향이라든지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이라든지 청소년 모의투표제 허용이라든지 투·개표 참관 허용 또 조례개폐청구권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 아직도 많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정개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청소년, 청년 또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태년 꼭 하셔야 됩니까?

○이탄희 위원 30초만……

○위원장 김태년 이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기본법상으로 청년들의 한 40% 정도가 피선거권이 없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피선거권 부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마 후속 조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당장 떠오르는 게 군미필인 경우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병역의무 이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정당 가입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사무총장님께서도 선관위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행정부서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아마 선관위에서 좀 검토를 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글썄, 그게 헌법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탄희 위원 개헌사항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별로 유례가 없고요. 또 40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 정치에서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고요. 30대의 전 세계적인 리더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점식 위원 저도 한 30초만……

○위원장 김태년 예, 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정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탄희 위원님께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게 결국은 민법상 성년의 나이 규정입니다.

선거권을 18세로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는 민법 5조에서 소위 권리만을 얻는 행위,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그런 저촉을 받지 않지만 지금 민법 4조와 5조를 제대로 개정하지 않으면 소위 선거 출마행위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설·대담 차량 계약이라든지 이것은 정치자금의 지출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민법 개정이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약간 우스개 판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소위 국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로 출마

한 사람이 일일이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뭔가를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님, 공직선거법 결과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실시되는 양대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의식이 하위규정 제정과 실제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민국	김민철	金炳旭	김승남
김영배	김태년	이은주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전주혜	정점식
정춘숙	조해진	홍정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박규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김세환
------	-----